

2002.7.22

條例案審查報告書

- 충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충주시수안보온천장설치및운영조례안

總務委員會

조례안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조례안	제안일자	회부일자	상정일자	의결일자	제안설명
충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002.7.2	7.2	7.20	7.20	기획감사과장
충주시수안보온천장설치및운영조례안	"	"	"	"	문화관광과장

2. 제안설명요지

가. 충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허가전담부서 신설시 건축업무의 이원화(허가민원과, 지적건축과)로 인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민원접수와 처리부서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부서명칭 변경과 분장사무를 조정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부서명칭 변경과 소관 국의 변경

- 허가민원과(시민생활지원국) → 허가민원과(경제건설국)
- 지적건축과(경제건설국) → 지적과(시민생활지원국)
- 환경미화과(시민생활지원국) → 환경과(시민생활지원국)

○ 수질환경사업소의 분장사무 이관

- 재해·배수시설 설치 및 조사 : 지역개발과로 이관
- 마을하수처리장 시설 및 수질관리 → 마을하수처리장 시설 운영 및 수질관리

○ 상수도사업소의 소재지 변경

- 금능동 700번지 → 단월동 34-1번지

나. 충주시수안보온천장설치및운영조례안

- 상모면 온천리 227-1번지에 최신식의 옥장시설을 마련하고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는 수안보온천장의 운영방법 및 방안을 마련한 후 개장되어야 할 것이며
- 현재 문경, 예천, 풍기온천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음
- 본 조례안은 수안보 온천의 우수성을 대내외에 널리 홍보하고 온천장을 시에서 직영하거나 위탁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임.

4. 질의 · 답변 요지

가. 충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 질의 : 건축의 규모와 상관없이 허가민원과에서 건축업무는 총괄 하는 것인가?
- 답변 : 예
- ▶ 질의 : 지적과는 지적업무로만 과를 존치하는 것은 구조조정에 상반되는 것 아닌가?
- 답변 : 공시지가 등 업무량이 증가되는 추세이며 현재 25명이 지적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 ▶ 질의 : 지적공사의 주 업무는?
- 답변 : 측량만을 주로하고 있음.
- ▶ 질의 : 건축관련 대장발급은?
- 답변 : 대장발급 등 단순 민원업무는 지금과 같이 민원실에서 발급할 계획임.

충주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43

제출년월일 : 2002. 7. .
제출자 : 충주시장

1. 제안이유

하수도법 개정 및 환경부 훈령 제509호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여 보완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가. 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 공고
 - 매년 2월말까지 시보 및 일간신문에 공고(안 제17조제3항)
- 나. 하수도사용 요율 구분업종 변경
 - 두채재배업소 : 산업용 → 기타

3. 근거법령

- 가. 하수도법 제32조
- 나. 환경부훈령 제509호(2002. 1. 14)

4. 사전예고결과

- 의견 없음.

5. 기타참고자료

- 없음.

충주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충주시하수도사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제4호중 “시장은 법 제32조제4항에 의하여”를 “법 제32조제4항에 의하여”로 하고, “시설 또는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는 자가 다음 각목과 같은 사유로 인하여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을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인하여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자는”으로 하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시장은 원인자부담금 부과를 위하여 매년 2월말까지 다음 각호에 관한 사항을 시보 또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하수발생량 산정방법(당해사업의 기본 또는 실시설계 보고서상의 수량,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5조 별표3 및 동법시행규칙 제21조 별표5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단독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방식)
2. [별표4]의 산정방식에 따른 m³당 원인자부담금 부과액
3.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의 규모별 설치비용

[별표 1-2], [별표 4] 및 (별지 제1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2]

하수도사업종별구분표

업 종	구 분 내 용
가 정 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용 또는 공용급수전에 의하여 가사용으로 급수하는 것 • 담배,연탄,양곡,문방구,지물,철물의 소매점 등으로서 10제곱미터 미만의 업소 • 신문보급소,신체장애자가 경영하는 점술집 및 지압업소 • 도시계획사업 등의 시행으로 인한 철거민 임시 이주단지에 대한 급수
업 무 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설소화전 • 시립위탁시설(청소년회관, 체육시설에 한함) • 사회구호단체,원호단체,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복지시설중 비영리법인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인·허가를 받아 설치·운영하는 시설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직영하는 사업 포함) • 학 교 • 정 당 • 농협,축협,수협,산림조합,한국은행,정부투자기관,전용전에 의한 철도용,지방공사 및 지방공단,비영리수영장,교회,사찰,국·공립 대학부속병원(국가,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병원 포함) • 병 영 • 신문사,방송국 • 한국과학기술단지의 연구기관 • 급수탑에 의한 급수(단, 공공의 목적으로 급수하는 경우에 한함, 공설소화전) • 시장이 지정한 무료공중이용화장실에 대한 급수 • 다른 급수업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소

업 종	구 분 내 용
영 업 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점객업, 공연장, 숙박업 • 유기장, 오락장, 노래방 • 백화점, 도매센타, 대규모소매점, 대형점, 시장(상가포함) • 차량판매, 정비업(검사장 포함), 주차장, 세차장, 주유소(석유 판매소 제외), 운송 또는 관광업(창고 보관업 포함) • 예식장 • 학원(도서실 포함, 피아노 개인지도 제외) • 사진현상소 • 체육시설업(탁구장업, 체육도장업, 바닥면적 100제곱미터 이상의 헬스크립과 연계하여 운영하는 수영장업 제외) • 금융기관(보험, 증권회사, 신용금고 등 포함, 전당포 제외) • 발전소 • 이발소 (미장원 포함) • 병원 • 인쇄소, 출판사(인쇄기계시설이 없는 업소 제외) • 화훼, 식목업 • 빌딩(다른 급수업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전용이 아닌 지하층을 포함한 4층이상 건물), 오피스텔 • 도살장, 정육업 • 양조업, 제빵업, 제분업(방아간 포함), 제당업, 청량음료 제조업, 의약품, 화공약품, 화장품 제조업, 전기 및 전자제품 제조업, 합성수지 제조업, 페인트류 제조업, 가구류 제조업(자재가공 포함), 연료제조(고압가스제조 포함) • 염색업 및 섬유류 제조가공업, 식료품제조가공업, 피혁제조 가공업, 기타 월평균 200세제곱미터이상 사용하는 제조가공업소 • 도금업(도금이 주업인 경위 한함) • 제재소, 목재소(목공소 제외) • 요업(시멘트 가공제품, 초자제품 포함) • 단기급수를 목적으로 임시 가설한 급수시설에 대한 급수(단, 운반 급수의 경우에는 최종단계요율 적용, 도시계획사업 등의 시행으로 인한 철거민 임시이주단지에 대한 급수 제외) • 건축공사장에 대한 급수(신축 또는 기존 건축물 멸실후 건축 하는 경우에 한함) • 수도관 파손에 의한 누수(단, 최종단계에 요율적용) • 별도 급수전에 의한 선박용 급수

업 종	구 분 내 용
욕탕 1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탕에 대한 급수(허가업소의 업태구분은 허가 기준)
욕탕 2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수목욕장업(허가업소의 업태구분은 허가기준) • 바닥면적 100제곱미터이상의 헬스크럽과 연계하여 운영하는 수영장에 대한 급수 • 가족탕업, 한증막업(허가업소의 업태구분은 허가기준) • 욕조 및 휴게실을 갖춘 안마시술소
산업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제조업체

- 주 1. 상기업종에 사용한 물은 상수도수, 지하수 및 기타수 등에 관계없이 해당 하수도업종을 적용한다.
2. 영업용중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제조업체는 산업용으로 적용한다.
3. 상기내용에 명시되지 아니한 업종에 대하여는 해당 유사업종으로 분류 적용한다.

[별표 4]

원인자부담금 산정방식

- 원인자부담금 = 하수종말처리시설원인자부담금 + 하수관거원인자부담금

- 하수종말처리장 원인자부담금

$$= m^3\text{당 원인자부담금}(원/m^3) \times \text{하수발생량}(m^3/\text{일})$$

- ※ $m^3\text{당 원인자부담금}$

$$= \text{하수종말처리시설 총사업비} \times \frac{1}{\text{하수종말처리시설용량}(m^3/\text{일})} \times \alpha$$

- ※ 총사업비는 조례 제17조제1항에 의하여 산정한 비용으로 지방양여금, 지방비를 포함한 금액으로 함.

- ※ $m^3\text{당 원인자부담금은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상기의 계산방법에 의거 시장이 매년 공고}$

- 하수관거 원인자부담금

$$= \text{하수관거 총사업비} \times \frac{\text{개발지역내 발생하수량}(m^3/\text{일})}{\text{하수관거의 계획하수량}(m^3/\text{일})} \times \alpha$$

- ※ 총사업비는 조례 제17조제1항에 의하여 산정한 비용으로 지방양여금, 지방비를 포함한 금액으로 함.

$$\alpha : (1 + \frac{\text{공공하수도 설치완공이후 } n \text{ 년평균 생산자 물가상승률}}{100})$$

n : 공공하수도 설치완료이후 경과 년수

(별지 제1호서식)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						처리기간 7일
설치자	법인명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시공자	법인명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배수설비현황	설치목적	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기타() 배제				
	설치위치	시·군·구 읍·면·동 번지(통반)				
	관종	PVC관, PE관, 흠관, VR관, PC관, 강관, 주철관, 기타				
	관경	Φ	mm	연장	m	접속방법 (하수관, 맨홀, 타배수설비, 기타)에 접속
	배출수량			m ³ /일	※ 환경부 고시 제2001-168(2001.11.20)호에 의하여 산정된 오수의 총량 또는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에 의하여 허가된 배출시설의 폐수량을 기입함.	
준공검사	검사항목			1차검사	2차검사	비고
	검사일자 (. . .)	보완사항	검사일자 (. . .)			
	1. 배수설비연결부적정시공여부 (누수, 지하수침투여부, 공공하수도, 타배수설비 체손여부, 체손시 적정 복구여부)					
	2. 배수설비경사도 (100분의 1이상)					
	3. 배수설비관경의 적정성					
	4. 배수설비 재질(내구성, 내부식성)					
	5. 오수·우수 분리배관 여부					
	6. 공공하수도, 타배수설비와의 오접여부					
7. 기타 상기신고사항 및 하수도법시행 규칙 별표의 기준 준수 여부						
검사자	성명 (서명또는인)	성명 (서명또는인)	년	월	일	
※ 검사자는 검사란에 각 항목에 대한 합격여부를 ○, ×로 표시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 및 재검사일자를 명기						
하수도법 제24조 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충주시장 귀하						
구비서류 :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						

신·구조문 대비표

□ 제명 : 충주시하수도사용조례

현 행	개 정 안
<p>④생 략</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 data-bbox="848 338 1439 664">1.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하수발생량 산정 방법(당해사업의 기본 또는 실시설계 보고서상의 수량,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법률시행규칙 제15조 별표 3 및 동법 시행규칙 제21조 별표5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단독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방식) <li data-bbox="848 664 1439 743">2. [별표4]의 산정방식에 따른 m³당 원인자부담금 부과액 <li data-bbox="848 743 1439 844">3.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의 규모별 설치비용 ④(현행과 같음)

리 協議하여야 한다. <改正 94·8·3·3, 97·3·7, 99·2·8 法5868>

⑤第3項 및 第4項의 規定에 의한 裁定이 있은 때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協議가 成立된 것으로 본다.

第30條 (市·郡에 대한 負擔命令) 道知事은 第7條第2項 또는 第28條의 規定에 의하여 道가 公共下水道에 관한 費用을 負擔하는 경우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公共下水道로 인하여 利益을 받는 市 또는 郡에게 그 費用의 全部 또는 一部를 負擔시킬 수 있다.

第31條 (兼用工作物에 관한 工事등의 費用負擔) 第1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施行하는 公共下水道에 관한 工事 또는 維持나 兼用工作物에 관한 工事 또는 維持에 요하는 費用은 당해 工事 또는 維持로 인하여 받는 利益의 범위안에서 당해 公共下水道管理廳과 兼用工作物管理者가 協議하여 이를 分擔하여야 한다.

第32條 (原因者負擔金等) ①公共下水道管理廳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量이상의 下水道를 排除할 수 있는 排水設備를 設置함으로 인하여 公共下水道의 改築이 필요하게 된 때에는 그 費用의 一部를 당해 排水設備를 設置한 者에게 負擔시킬 수 있다.

②公共下水道管理廳은 他工事 또는 他行為(公共下水道에 영향을 미치는 工事의 行為)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公共下水道에 관한 工事에 요하는 費用의 全部 또는 一部를 당해 他工事의 施行者 또는 他行為者에게 負擔시키거나 당해 工事を 施行하게 할 수 있다. <改正 99·2·8 法5868>

③公共下水道管理廳은 公共下水道를 損壞시킬 行為를 하는 者가 있을 때에는 그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公共下水道의 修繕 또는 維持에 필요한 費用의 全部 또는 一部를 그 行為者에게 負擔시킬 수 있다.

④公共下水道管理廳은 下水終末處理施設의 사용개시이후에 그 하수처리구역안에서 汚水·糞尿 및 畜産廢水의 처리에 관한法律 第9條第1項 또는 第1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汚水處理施設 또는 單獨淨化槽를 設置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그施設을 設置하는데 소요되는 費用의 전부 또는 일부를 公共下水道의 설치에 필요한 費用으로 부담시킬 수 있다. <新設 94·8·3·99·2·8 法5864, 2001·3·28>

⑤第1項 내지 第4項의 負擔金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은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 정한다. <改正 93·12·10, 94·8·3>

第33條 (附帶工事의 費用負擔) ①第11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施行하는 他工事에 요하는 費用은 第20條의 規定에 의한 許可(第3條의 規定에 의하여 한 協議